

# 강릉역 경남아너스빌 더 센트로(조합원 취소분)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 무순위 청약 주의사항 ※

“단순 청약” 등 계약의사가 없으신 분께서는 청약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조건 및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른바 “묻지마 청약”을 하고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아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 상실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자금계획”과 “청약조건”을 갖추지 못하시는 경우는 청약신청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3)648-5033

| 주택유형  |              | 규제지역 여부          |              |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              |              |
|-------|--------------|------------------|--------------|-----------------------------------------|--------------|--------------|
| 민영    |              | 비규제지역            |              |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              |
| 재당첨제한 |              | 전매제한             |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없음    |              | 없음               |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구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접수일  | 당첨자 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일정    | 25.12.26.(금) | 26.01.29.(목)     | 26.02.03.(화) | 26.02.06.(금)                            | 26.02.09.(월) | 26.02.10.(화) |

1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 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카카오인증서 |
|-------------------------------|-------|-------|--------|---------|-------|-------|--------|
| APT잔여세대(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O     |       | X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법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1.29.(목)**이며 (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033**입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2.26.(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640**이므로,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급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분 | 무순위(사후) 접수                                                                                      | 당첨자 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6.02.03.(화)                                                                                    | 26.02.06.(금) | 26.02.09.(월)                                    | 26.02.10.(화) |
|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모바일) 청약홈 (09:00 ~ 17:30)</li> <li>현장접수 불가</li> </ul> | (PC·모바일) 청약홈 | 강릉역 경남아너스빌 더센터로 조합사무실<br>(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명륜로 85번지) |              |

- ※ 청약 신청취소는 청약신청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강릉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역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무순위 |
|--------|-----|
| 전매제한기간 | 없음  |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명륜로 85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24층 8개동 총 456세대 (조합원 취소분 16세대 중 잔여 7세대)

■ 입주시기 : 현재 입주 가능(2026년 2월)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 주택<br>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br>(전용면적기준) | 약식<br>표기 |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            |          | 기타<br>공용면적<br>(지하주차장등) | 계약<br>면적 | 세대별<br>대지지분 | 무순위<br>세대수 |
|----------|------------|----|-----------------|----------|-------------------------|------------|----------|------------------------|----------|-------------|------------|
|          |            |    |                 |          | 주거<br>전용면적              | 주거<br>공용면적 | 소계       |                        |          |             |            |
| 민영<br>주택 | 2026910033 | 01 | 59.6657A        | 59A      | 59.6657                 | 22.8187    | 82.4844  | 57.6899                | 140.1743 | 36.9692     | 3          |
|          |            | 02 | 84.9907         | 84       | 84.9907                 | 31.1560    | 116.1467 | 82.1763                | 198.3230 | 52.6607     | 4          |
|          | 합 계        |    |                 |          |                         |            |          |                        |          |             | 7          |

■ 공급금액 [단위 : 세대, 원]

| 주택형      | 약식<br>표기 | 공급<br>세대수 | 동 · 호수   | 분양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           |          |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59.6657A | 59A      | 3         | 101-0903 | 414,170,000 | 41,417,000 | 372,753,000   |
|          |          |           | 102-1701 | 424,150,000 | 42,415,000 | 381,735,000   |
|          |          |           | 105-1301 | 419,160,000 | 41,916,000 | 377,244,000   |
| 84.9907  | 84       | 4         | 105-0204 | 576,132,000 | 57,613,200 | 518,518,800   |
|          |          |           | 105-1604 | 597,210,000 | 59,721,000 | 537,489,000   |
|          |          |           | 106-0201 | 576,132,000 | 57,613,200 | 518,518,800   |
|          |          |           | 107-1904 | 597,210,000 | 59,721,000 | 537,489,000   |

■ 추가선택품목 선택 세대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VAT 포함)

| 약식표기 | 동   | 호수  | 품목              | 설치위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     |                 |       |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59A  | 101 | 903 | 엔지니어드스톤 벽체 및 상판 | 주방    | 1,860,000 | 186,000  | 1,674,000     |
|      |     |     | 펜트리             | 시스템선반 | 320,000   | 32,000   | 288,000       |
|      |     |     | 하이브리드 쿡탑        | 주방    | 930,000   | 93,000   | 837,000       |

- 본 아파트는 동별 준공된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로서 기설치된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계약이 필수이며, 기 설치된 추가품목 이외에는 추가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동별 준공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로 최초 계약 당시 기선택 품목과 현 상태를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 가능)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 경남은행 | 207-0133-9689-03 |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
| 추가선택품목 | 광주은행 | 1107-021-312665  | 경남기업 주식회사  |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증은 계약체결시 건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대한민국 전국</b>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li> <li>•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
| 청약신청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li> <li>-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li> <li>-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li> <li>-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li> </ul> </li> </ul>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li> <li>•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b>900%</b>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li> </ul>                                                                                                 |

##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형 및 주택명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발표 서비스

|     |                                                                                                                                                                                                                                                                                                                                                                                                                     |
|-----|---------------------------------------------------------------------------------------------------------------------------------------------------------------------------------------------------------------------------------------------------------------------------------------------------------------------------------------------------------------------------------------------------------------------|
| 청약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 조회</li> <li>- <b>조회기간</b> : 2026.02.06.(금) ~ 2026.02.15.(일) (10일간)</li> <li>- 당첨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
| 문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일시</b> : 2026.02.06.(금) 08:0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b>제공대상</b> : 청약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b>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li> <li>-통신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6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 서류 접수 일시 : 2026. 02. 09. (월)  
 ※ 계약 체결 일시 : 2026. 02. 10. (화)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                       |       |                                                                                                                                                                                           |
| 공통서류 | ○    |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본인    | • 조합사무실에 비치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br>-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 ○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br>• 본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제3자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
|      | ○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br>•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출입국 기록여부를 "Y"로 설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      |      |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배우자   | •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                                                                                                                                                                                                                                                                                                                                                                                                                                                                                                                                                             |
|-------------------------|---|---|--------------------------|--------------|-------------------------------------------------------------------------------------------------------------------------------------------------------------------------------------------------------------------------------------------------------------------------------------------------------------------------------------------------------------------------------------------------------------------------------------------------------------------------------------------------------------------------------------------------------------|
| 해외근무자<br>(단신 부임)        | ○ | ○ | 해외체류(단신부임)<br>관련<br>증빙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 계속하여 90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li> <li>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li> <li>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 서류 모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비자발급 내역 /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li> <li>※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li> </ul> </li> </ul> |
|                         |   | ○ | 주민등록초본(상세)               |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li> </ul>                                                                                                                                                                                                                                                                                                                                                                                               |
|                         |   | ○ |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             | 배우자 및<br>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원 및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li> <li>※ 기록 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li> </ul>                                                                                                                                                                                                                                                                                                                                                     |
| 부적격 통보를<br>받은자          |   | ○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li> <li>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제8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li> <li>공동주택가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 사업주체가 증빙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li> </ul>                                                                                                                                                                                                                                                                                                                                  |
| 대리인<br>(본인 외 모두<br>제3자) | ○ |   | 위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사무실 비치, 당첨자의 인감이 날인 필요</li> </ul>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li> <li>※ 대리인 접수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li> </ul>                                                                                                                                                                                                                                                                                                                                                                                                                                                |
|                         | ○ |   | 신분증 및 도장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제외)</li> <li>※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li> </ul>                                                                                                                                                                                                                                                                                                                                        |
| 기타                      |   | ○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li> </ul>                                                                                                                                                                                                                                                                                                                                                                                                                                                                    |

####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6.02.10.(화) 14:00까지 입장 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시 : 26.02.10.(화)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소유권이전예관한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한 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체결과 관련한 인지세는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사업주체가 연대하여 균등하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http://www.e-revenuestamp.or.kr/)) 또는 취급 금융기관(우체국,은행)에서 발급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액(기재금액기준) :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15만원, 10억초과 35만원
- ※ 계약체결이후 부적격당첨, 공급질서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후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리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 [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서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주거전용 면적85제곱미터이하로서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2)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지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별표1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1월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취득(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시행령」 제2조각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8

### 기타 계약자 안내

####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 구분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 개수(필요시)                                          |
|--------------------|-------------------|------|-------------------------------------------------------------------|
| 건축부문 설계기준<br>(제1호) | 단열 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br>(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 적용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
|                    | 고효율 급수펌프(마목)      | 적용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                                                         |
| 전기부문 설계기준<br>(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고효율 변압기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목)    |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 ■ 분양보증

강릉역 강남아너스빌 더센터로는 2025년 10월 29일 강릉시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아파트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필요하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 공동주택 사용검사 확인증

공동주택 사용검사 확인증

|           |                                               |               |          |
|-----------|-----------------------------------------------|---------------|----------|
| 사용검사구분    | 주택건설사업(세민계) [공구별] [동별] [세대조성사업]               |               |          |
| 사업계획 승인번호 | 2021-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               |          |
| 공구명/동 명칭  | 강릉역 강남아(스빌 더 센트로                              |               |          |
| 상호        | 강릉교동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                               | 등록번호          | - -      |
| 대표자       | 윤용암                                           | 법인등록번호 (영수증일) | 19500814 |
|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난설원로78번길 29-7 (포남동)·근린생활시설용 201호(포남동) |               |          |
|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200                            | 대지면적(㎡)       | 20,033.5 |
| 건축면적(㎡)   | 4,806.5325                                    | 건축물면적         | 23.99    |
| 면적(㎡)     | 75,248.6554                                   | 용적률(%)        | 214.84   |
| 용수(구분)    | 9/21                                          | 세대수           | 456      |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2025-10-29

강릉시

시장인

20250729091501 (강릉시개발용도)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관련 고지사항

-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사업주체(“매도인”)가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사업주체(“매도인”)”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하다.
-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사업주체(“매도인”)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

■ 사업주체, 자금관리대리사무사 및 시공회사

| 구분                  | 사업주체                                 | 자금관리대리사무사                    | 시공사                            |
|---------------------|--------------------------------------|------------------------------|--------------------------------|
| 상호                  | 강릉교동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                      |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 경남기업 주식회사                      |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난설원로78번길 29-7, 201호(포남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176번길 25, 2층 (권곡동) |
| 법인등록번호<br>(사업자등록번호) | 602-82-66949                         | 110111-2937831               | 110111-0008262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키즈카페, 맘스테이션, 휘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등이며, 내부시설물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실 시공시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체 주차대수는 714대(공동주택 684대, 판매시설 30대)로 일반주차·여성전용주차·전기자동차주차·장애인주차가 지상 및 지하주차장으로, 판매시설 전용 일반주차·여성전용·장애인주차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서 청약 전 현장방문 등으로 주변여건을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 당첨자에 한해 계약 전 세대 방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분양 이후 견본주택, 설계도서 등의 변경사항을 입주자 안내문으로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명륜로 85번지

■ 분양 문의 : ☎ 033) 648 - 5033

※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 계약서가 우선합니다.)